C - 110 - 2018

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43조 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수직형 추락방망"이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한다.
 - (나) "그물코"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.
 - (다) "재봉사(絲)"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(인조섬유 등)을 말한다.
 - (라) "테두리 로프"라 함은 방망의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.
 - (마) "달기 로프"라 함은 테두리 로프의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.